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24
----------	----

제출년월일	2003. 7. 15
제출자	사천시장

1. 제안사유

-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수리계관리조례 (2002. 6.10)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의 개정(2002.12.30)으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조례로 정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수혜자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토록 함(안 제4조)
- 나. 수리계 임원으로 계장1인과 간사1인, 감사2인 이내로 두며,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토록 함(안 제9조)
- 다.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안 제10조)
- 라. 수리계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1조)
- 마.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사천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토록 함(안 제13조)
- 바. 수리계의 해산은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하 및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등의 사유가 발생시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산토록 함(안 제15조)
- 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항)

3.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제2항

4. 주요토의 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없음

라. 기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없음

(2)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기간: 2002.11.4 ~ 11.23(20일간)

나) 예고방법: 신문게시 공고(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다) 의견제출 내용 및 반영: 없음

라) 규제심사: 없음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1인과 간사1인, 감사2인 이내로 두며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가 법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기준은 규칙 제53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영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가 규칙 제53조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나,다목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규칙 제5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규칙 제53조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지사장
2. 규칙 제53조제3호 나,다목의 경우에는 시장

③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증 교부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된 규약의 제출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및 수리계 운영상황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③(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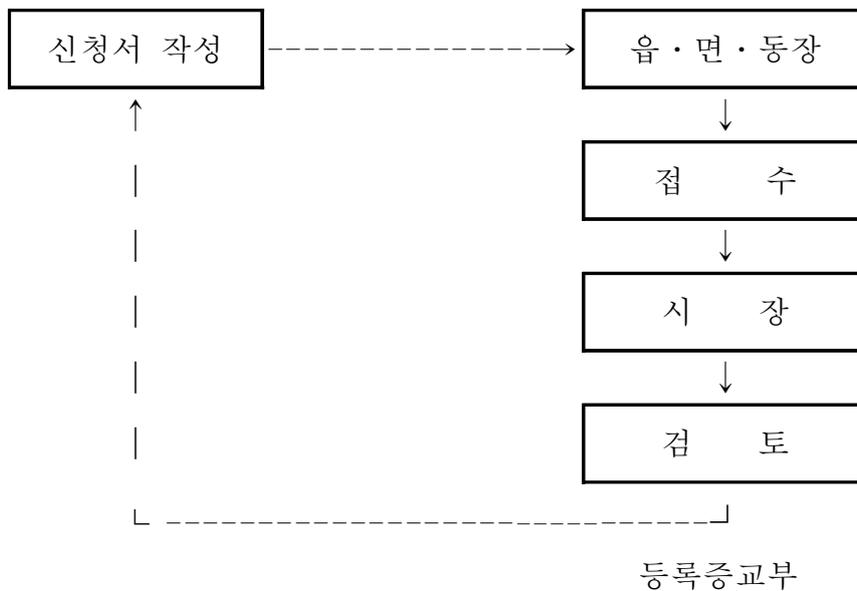
④(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경상남도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경상남도수리계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뒷쪽)

제출 및 처리 기 관	사천시시장
근 거 법 규	<p>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 제4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리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의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수리계 등록증

- 수리계의 명칭 :
- 성 명(대표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시설소재지):
- 구 역 면 적 : ha
- 수 혜 면 적 : ha

사천시수리계설치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수리계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 ○ 수 리 계

(전화번호)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수 신 :

발 신 : ○○수리계장(인)

제 목 : 수리계 운영상황보고

1. 수리계의 현황

조직일자	계원수(인)	기반시설명	구역면적	수혜면적	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	부 과 계원수	부과내역				징수액 (%)	징수율 (%)	현재감가상각 총당금 보유액 (%)
		현금 (원)	노 역		계(원)			
			인원(명)	금액(원)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총당금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총당금 상황

예산액 (원)	결산액 (원)	결산액중 개·보수액(원)				감가상각총당금(원)			
		보조	차입금	자부담	계	전년 이월	당년 이월	당 년 사용액	총 당 금 전액누계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설명	정비부분	정 비 소 요 액 (원)			비 고
		노 역	기 타	계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 25일 현재임

관 계 법 령 발 취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4.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물 등 영농 시설을 말한다.

제108조(수리계)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수리계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2.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7조(수리계의 경비징수의뢰 등) ①수리계는 법 제108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경비의 징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성명·납입금

액 및 납입기한 등을 기재한 경비부과 명세서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취지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수리계가 의뢰한 경비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수리계가 법 제10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는 수수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3으로 한다. [본조신설]

3.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조직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가. 운영경비: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농업기반 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기준

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 천재·지변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본조신설 2003.1.16]